

【 4 】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

제출년월일 : 1996. 5. 10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광역행정 수행을 위해 우리군의 4개 시·군으로 구성·운영되고 있는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중 파주군이 파주시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구성 자치단체 명칭중 파주군을 파주시로 변경

□ 주요골자

- 제3조(구성)중 “동두천시, 양주군, 파주군, 연천군, 포천군”을 “동두천시, 파주시, 양주군, 연천군, 포천군”으로 개정
- 제4조(조직) 제1항중 “동두천시장, 양주군수, 파주군수, 연천군수, 포천군수”를 “동두천시장, 파주시장, 양주군수, 연천군수, 포천군수로 개정
- 제14조(실무협의회) 제2항중 “기획(감사)실장”을 “기획(감사)실장(담당관)”으로 개정

##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

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(구성) 중 "동두천시, 양주군, 파주군, 연천군, 포천군"을 "동두천시, 파주시, 양주군, 연천군, 포천군"으로 한다.

제4조 (조직) 제1항중 "동두천시장, 양주군수, 파주군수, 연천군수, 포천군수"를 "동두천시장, 파주시장, 양주군수, 연천군수, 포천군수"로 한다.

제14조 (실무협의회) 제2항중 "기획 (감사) 실장"을 "기획 (감사) 실장 (담당관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협의회는 동두천권 관련 지방 자치단체인 <u>동두천시, 양주군, 파주군, 연천군, 포천군</u>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협의회는 동두천권 관련 지방 자치단체인 <u>동두천시, 파주시, 양주군, 연천군, 포천군</u>으로 한다.</p>
<p>제4조(조직) ①협회의의 위원은 <u>동두천시장, 양주군수, 파주군수, 연천군수, 포천군수</u>로 하고 회장은 중심 자치단체장인 동두천 시장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조직) ①협회의의 위원은 <u>동두천시장, 파주시장, 양주군수, 연천군수, 포천군수</u>로 하고 회장은 중심 자치단체장인 동두천 시장으로 한다.</p>
<p>제14조(실무협의회) ①(생략)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<u>기획(감사)실장</u>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<u>상정안건</u>에 따라 관계 실과소장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실무협의회) ①(현행과 같음)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<u>기획(감사)실장(담당관)</u>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<u>상정안건</u>에 따라 관계 실과소장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</p>